

<h1 style="margin: 0;">보도자료</h1> <p style="margin: 0;">2013. 6. 24.</p>	 <h2 style="margin: 0;">대 법 원</h2> <p style="margin: 0;">Supreme Court of Korea</p>	
	담당부서	양형위원회
	담당자	운영지원단장 강동혁 (☎ 3480-1924)
	공보관실 ☎ 3480-1451	

4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군 등 선정

양형위원회는 2013. 6. 24. 16:00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제50차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과 같이 4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 및 수정 대상 범죄군 선정을 의결

1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 선정

○ 선정 기준

- 유사한 사안에 대한 불합리한 양형편차 해소 등 양형기준의 목적
- 대상 범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
- 범죄 발생 빈도
- 1, 2, 3기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의 관련성
 - ※ 1기 양형기준 : 살인, 뇌물, 성범죄, 강도, 횡령·배임, 위증, 무고범죄
 - 2기 양형기준 : 약취·유인, 사기, 절도, 공문서, 사문서, 공무집행방해, 식품·보건, 마약범죄
 - 3기 양형기준 : 증권·금융, 지식재산권, 폭력, 교통, 선거, 조세, 공갈, 방화범죄

○ 선정된 대상 범죄군

■ 배임수·증재

- 거래의 청렴성을 보호법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화이트칼라 및 부패범죄

■ 변호사법위반

- 대표적인 부패범죄로서 사회적으로 이목을 집중시키는 중요한 사건이 다수 발생

■ 권리행사방해 범죄

- 권리행사방해, 강요, 인질강요, 인질상해·치상, 인질살해·치사, 점유강취, 강제집행면탈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군으로서, 법정형이 높은 중한 범죄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

■ 성매매알선 등 범죄

- 기업형 성매매알선 및 인터넷 등을 통한 광범위한 성매매알선행위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폐해가 날로 커지고 있는 범죄

■ 게임물 관련 범죄

-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서, 사회적 폐해가 크고 범죄발생 빈도가 높은 범죄

■ 체포·감금, 유기·학대 범죄

-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군
- 최근 가정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벌어지는 아동·노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유기, 학대 등의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

■ 장물, 손괴 범죄

- 장물범죄의 경우 재산범죄 전반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, 최근 절도나 강도 등 다른 재산범죄를 유발하는 범죄로서의 사회적 해악이 부각되고 있음
- 형법상 재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완결 의미

■ 신용, 업무와 경매에 관한 범죄

-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하는 범죄군으로,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요사건이 발생하고 있음

②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 선정

○ **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양형기준 수정**

양형기준 시행 후 관련 법률이 개정된 아래 범죄군들에 대하여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양형기준을 수정하기로 의결

■ **약취·유인범죄**

- 양형기준 2011. 3. 21. 의결, 2011. 7. 1. 시행
- 개정 형법 및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3. 4. 5. 공포 및 시행
- 개정 법률은 ① 인신매매 관련 처벌조항 신설, ② 목적범 형태의 약취, 유인 등 죄에 '노동력 착취, 장기적출' 등 신중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추가, ③ 결과적 가중범 신설, ④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가중처벌 조항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함

■ **마약범죄**

- 양형기준 2011. 3. 21. 의결, 2011. 7. 1. 시행
- 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1. 6. 7. 공포, 2012. 6. 8. 시행
- 개정 법률은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 신설,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류 거래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며, 처벌조항의 적용법조에 많은 변경이 이루어짐

■ **식품·보건범죄**

- 양형기준 2011. 3. 21. 의결, 2011. 7. 1. 시행
- 농산물품질관리법, 수산물품질관리법이 2011. 7. 21.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통합, 2012. 7. 22. 시행
- 화장품법 2011. 8. 4. 개정, 2012. 2. 5. 시행
- 식품·보건범죄 관련 법령의 경우 대부분 적용법조나 용어의 변경 등 기술적 부분이 개정됨
- 다만, 유해식품 사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위해 식품·보건범죄 양형기준을 상향조정하지는 의견도 있어, 운영점검을 통해 기존 양형기준에 보완할 점이 있는지 등을 검토한 후 수정 범위에 관하여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함

③ 양형기준 설정 방식 및 시기

○ **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매년 양형기준 의결, 시행**

- 양형위원회 활동계획을 규모 있게 세우고, 수립된 양형기준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양형위원회 임기를 전반기(2013. 4. 27.~2014. 4. 26.)와 후반기(2014. 4. 27.~2015. 4. 26.)로 나누어 매년 양형기준을 의결, 시행하기로 함

○ **전반기 양형기준 수립 대상 범죄군**

- 양형기준 설정 범죄
변호사법위반, 배임수·증재, 성매매알선등 범죄, 체포·감금·유기·학대 범죄
- 양형기준 수정 범죄
약취·유인, 마약범죄

○ **후반기 양형기준 수립 대상 범죄군**

- 양형기준 설정 범죄
권리행사방해, 게임물관련 범죄, 장물·손괴 범죄, 신용·업무와 경매에 관한 범죄
- 양형기준 수정 범죄
식품·보건범죄

※ **양형기준 수립 절차**

단 계	담당	내 용	
1	양형기준 초안 작성	전문위원	전문위원단은 양형기준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
↓			
2	양형기준안 의결	위원회 소위원회	위원회는 양형기준 초안을 심의하여 양형기준안을 마련
↓			
3	공청회 및 의견조회	위원회	위원회는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공청회 및 국회 등 관계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를 진행
↓			

4	양형기준안 수정	위원회 소위원회	위원회는 공청회 및 의견조회 결과를 반영하여 양형기준안을 수정
---	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

5	양형기준 확정 및 공개	위원회	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이 최종 의결되면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
---	--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4] 향후 일정

- 개별 범죄군에 포함되는 구체적 범죄유형의 결정
 - 전문위원 회의, 소위원회 회의 등을 통하여 4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군으로 선정된 8개 범죄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할 범죄유형의 범위를 검토
-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에 관한 양형자료 조사 및 양형통계분석 실시
 - 4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들에 관하여 확정사건에 대한 양형자료 조사 실시
 - 구체적 범죄유형마다 양형인자 추출, 연관성 분석, 선고형 분포 등에 관한 통계 분석 실시
- 다음 위원회 51차 회의는 2013. 9. 6.(금) 워크숍 일정과 겸하여 개최 예정
 - 양형기준안의 유형분류, 형량범위 등에 관한 논의 예정